

2009. 5. 13

條例案審查報告書

- [1] 충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충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總務委員會

條例案審查報告書

1. 심사경과

조례안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의결일자	제안설명
① 충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9.5.4	2009.5.4	2009.5.12	2009.5.12	충주시장 (총무과장)
② 충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	"	"	"
③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④ 충주시 세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	"	충주시장 (세정과장)

2. 제안설명요지

① 충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투표연령 및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등 주민투표법이 일부개정('09.2.12)됨에 따라 충주시주민투표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정보 제공을 위해 시의 책무 신설(안 제2조제4항)

나.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조정(안 제3조)

- 20세 이상 → 19세 이상

다.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 구권자인지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 마련(안 제8조~제10조)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주소, 거소, 체류지

※ 위 내용을 별지 제1호~제7호 서식중 작성요령에 반영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연스럽지 아니한 표 현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② 충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읍면동위임사무를 정비하여 능률 향 상과 사무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위임사무 신설 및 삭제

- 신설 : 이륜자동차의 강제처리, 소하천점용료 부과 및 징 수
- 삭제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의료급여증 재발급

- 나. 구 수안보개발사업소의 상수도 관련 업무를 수안보면으로 이관
- 다. 위임사무 관계법령 변경사항 반영

③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공공기록물의 수집, 안전한 보존, 필요한 정보제공 등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 정원 : 1,273명 (변동없음)

직종별	정 수			조정내역
	현행	조정	증감	
계	985	985	0	
일반직	980	979	△1	전산9급 △1
연구직	5	6	+1	지방기록연구사 +1

④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재산세 과세표준제도 변경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는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재산세 과세표준제도 변경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자 도시계획세율을 1000분의 1.4로 한다.
(0.1%p 인하)
- 나. 잣은 조례개정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주행세율을 법규 정에 의한 세율에 준하도록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① 충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투표의 투표권자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재외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에게 투표권이 부여되는 등 상위법인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서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주민투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정책사항 등을 결정하는 제도로써 충주시에서는 2004년 조례제정 이후 주민투표가 실시된 적은 없으며,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으로 제주도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없애고 단일광역자치단체

로 개혁하는 혁신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한바 있으며,

부안군에서는 핵폐기장 유치에 따른 찬반여부를 주민 투표에 부쳐 유치반대결정을 내린바 있음.

-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보면

투표연령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낮아졌고,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영주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에게만 주어지던 투표권이 국내에 거소신고가 되어있는 재외국민에게까지 확대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이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들을 반영한 것으로서 검토 결과 특이사항 없음.

② 충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 조례안은

시와 읍·면·동간 보다 능률적인 업무처리와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에서 업무를 상호 조정하려는 것임.

- 읍면동으로 위임되는 사항들을 검토하여 본 바,

이륜자동차의 강제처리는 방치된 이륜자동차를 처리하는 업무로써 현재 이륜자동차의 등록 및 폐지 업무를 읍면동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와 많이 관계된 본 업무 또한 읍면동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소하천 점용료 부과 및 징수업무는 「충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9조에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본 위임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임.

- 읍면동에 위임되어 있던 사무를 환원하는 것으로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경우 허가와 연관되어 타 실과와 상호 협조를 받거나 관련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읍면에서 처리하는 것 보다는 시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의료급여증의 재발급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읍면동장이 발급해 줄 수 있고 또한 각급 병원에서 신분확인만 되면 진료가 가능하므로 읍면동에서 특별히 이를 담당하게 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 수안보 지역의 상수도 업무관련 민원처리 및 검침업무를 종전에는 수안보개발사업소에서 담당해 왔으나 사업소가 폐지되고 관광과로 흡수되었으므로 상수도과 업무의 일부를 관광과에서 처리하는 형국이 되어 업무분류 체계상 맞지 않으며 각 읍면지역의 상수도 관계 업무를 읍면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수안보면 또한 이를 이관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그 외에 개정되는 사항은 관계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특이사항이 없으며, 전체적으로는 시와 읍면동간 여러 가지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본 개정에 따라 각종 민원 처리에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③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에 대한 보존 및 관리 등을 위해 2008년 12월 31일까지 “기록관”을 설치하고 기록물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서 전산직 1명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을 이수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은 한국국가기록원과 명지대가 공동으로 설립한 「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에서 담당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에서 조속히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④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 조례안은

과세표준 현실화에 따라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조세부담을 다소 완화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세율을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고

주행세율이 수시로 변경되므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규정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 정부는 2006년부터 재산세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2017년까지 “개별주택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과표 기준을 100%까지 현실화하기 위해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왔으나

주택 및 토지가격이 하락하여도 과표 비율이 상승하여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과도하게 증가되므로

매년 5%씩 일률적으로 인상하던 “적용비율”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2009년 2월 6일 「지방세법」을 개정하였으며,

과세표준 현실화 목표치도 공시가액의 100%였던 것을 토지와 건축물은 90%, 주택은 80%로 하향 조정하였음.

- 금년도에 적용하게 되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토지와 건축물 70%, 주택 60%로 행정안전부에서 5월까지 정할 예정이나,

이에 따르게 되면 과표비율이 전년도보다 각각 5%씩 상승하게 되므로 주택가격이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 조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따라서, 증가하는 조세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금년 6월 1일 전까지 도시계획세율을 인하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주행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빈번히 개정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안과 같이 해당 법조항의 세율을 따르도록 한다면 조례개정의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됨.

4. 질의 · 답변 요지

① 충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질의 : 없음

② 충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질의 : 인원보충은 안 해도 되는가?
- 답변 : 현재 수안보면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겸침원은 지원이 될 것임.
- ▶ 질의 : 조례개정 효과는?
- 답변 : 그동안 조례에 의하지 않던 사항을 정비하는 차원임.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답변 : 전문요원을 어떻게 채용하는 것인가? 전문요원은 있나?
- ▶질의 : 조례개정이 완료되면 전문요원을 도에 채용의뢰를 함.
- 답변 : 임용방법은?
- ▶질의 : 공개경쟁채용하게 됨.
- 답변 : 1인이 계속 근무하게 되면 문제점은 없는가?
- ▶질의 : 전국적인 사항임.

[4]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질의 : 없음

5. 심사결과

[1] 충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 충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3]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4]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